「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년 4월 7일

나. 제 출 자: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2026년 4월 8일

라. 상정일자: 2026년 4월 16일

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첨단산업국장 남 병 국

나. 제안이유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전환 필요성 증대로 재생에너지의 보완재로 수소가 주목받고 있어, 정부의 수소 산업 육성 전략과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 관련 중소기업을 전문기업으로 발굴·육성 지원을 하고자 함

2)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 무 명 :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2) 추진근거 및 필요성

가) 추진근거

(1) 「지방자치법」 제117조

(2)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3)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5조(과학기술 진흥사업 등), 제9조(관련사업 추진), 제10조(경비보조)

나) 필요성 : 예비수소전문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 현황조사, 기술·사업성 분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요구되는 사무로, 수소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3) 위탁 사무 내용 :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 전반

가) 구미시 예비수소전문기업 발굴 및 선정

나) 수소기업 기술사업화·판로개척·컨설팅 등 기업지원사업 운영

다) 지원기업 사업 수행 관리 및 추진상황 점검

라) 사업성과 분석 및 결과보고 등 사후관리

4)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해당없음

5) 위탁기간 : 2026. 5. ~ 12.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70백만원(도 81, 시189)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비고
270	27	242	1	

7)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6년 구미시 첨단산업국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6.02.12.)

8) 위탁구분 : 재계약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9) 부서의견

가) 본 사업은 지역 수소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을 통해 지역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계적인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

나) 수소산업 기업지원 전문성과 수행체계를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수소기업 육성 및 사업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라. 참고사항

1)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117조,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4조, 제6조,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제5조(과학기술 진흥사업 등), 제9조(관련사업 추진), 제10조(경비보조)

2) 예산조치: 2026년도 예산편성

3)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6년 구미시 첨단산업국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4)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관련 조례 2026. 1. 1. 시행)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호 규

○ 본 동의안은

- 수소 산업 육성 전략에 맞춰 관내 예비수소전문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사업 기획 및 운영 전반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예비수소전문기업 발굴 및 선정, 기술사업화 등 기업지원 사업, 사업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과 수소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요구되는 사무임.

-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도비 확보(30%)를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됨.

- 다만, 본 동의안이 제출된 시기를 고려할 때, 집행기관에서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제2항인 “사무를 공공위탁하기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미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 비용추계서의 산출 근거와 합계 금액이 상이하므로, 안건 제출 시 면밀한 사전 검토 후 안건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6.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7. 심 사 결 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